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0. 26.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10월 16일 이필례 의원 외 7명
- 나. 회부일자 : 2015년 10월 19일
- 다. 상정일자 : 제1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10월 26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강희향 의원

가. 제안이유

마포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마포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1) 주민참여 조례의 목적, 기본 이념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제3조)

나.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제5조)

다.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주민 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및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공청회, 위원회 및 사회약자의 주민참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13조)

마. 회의자료 공개, 주민참여 사업, 주민의견조사 실시, 참여 보상 등 (안 제14조~제17조)

바.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8~제19조)

사. 위원회 수당 등(안 제20조)

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외에는 본 조례에 따름(안 제21조)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본 조례안은 마포구 주민과 마포구가 상호 협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마포구 주민의 구정 전반에 대한 참여를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물론 주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同)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부터 제22조 시행규칙까지 본문 2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1조~제3조에서 주민참여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본 이념 및 용어 정의를 정의하고

나.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하였으며

다.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라. 안 제7조~제13조에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항

주민 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및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공청회 등, 위원회 및 사회약자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 안 제14조~제15조에서는 회의자료 공개 및 주민참여 사업 분야

바. 안 제16조~제17조에서 주민의견조사 실시 및 참여 보상

사. 안 제18조~제19조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아. 안 제20조에서 위원회 수당 등을 규정 하였으며

자. 안 제21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외에는 본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음.

○ 최근 행정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계획 등 결정 시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계획중심의 행정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행정계획부터 직접참여하는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구에서도 주민제안,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및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 시 부터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이번 조례에서 규정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구 주민참여 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동(同) 조례안은 2015.10.19.~10.23.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담당부서 의견으로는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 주민참여 예산 등은 기존 법령 및 개별 조례상 규정하고 있어 동(同) 조례가 선언적 의미의 입법 성격이 강하지만, 주민참여에 대한 총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기본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주민제안,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는 기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상위법에 대한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同) 조례안 제3조에서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면서

1) 일부 자치단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서는 행정자치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재정정책과-5215호, 2010.11.1)에 따라 관할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및 마포구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임·직원까지 포함하여 “주민”을 확대하여 정의하였으나,

2)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규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에 대한 정의는 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사청구 대상을 정하고 있고, 이때 ‘주민’은 같은

법 제13조(주민의 권리)제2항에서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성격이 ‘주민참여 감사’와 ‘주민참여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주민’의 대상범위를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정하여 마포dlq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주민’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